

서울특별시 강남구장애인휠체어수리전문업체지정약정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유한회사이(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원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한 수리전문업체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갑”과 “을”이 장애인들의 휠체어 수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정서에 있어서 “지정업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를 위해 “갑”이 지정한 전문업체를 말한다. ② 또한, “휠체어”라 함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정서의 규정은 “갑”이 “을”에게 위임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약정기간)

- ① 약정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 ② 약정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이 약정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5조(준수사항)

- ① “을”은 휠체어 수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이 “을”에게 휠체어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지원대상자의 상담·문의 등에 대하여 성의를 갖고 친절히 응하여야 한다.

3. “을”은 지정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여야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또는 지원금 중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4. “을”은 사업기간중 중도에 양도하거나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1개월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지원대상자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이 수리 의뢰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일로부터 당일 또는 익일까지 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체”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정서에 의한다.

제6조(신의성실의무) ① “을”은 휠체어 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로써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전문업체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을”은 휠체어 수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지원대상자의 휠체어 수리신청에 대하여 거주지 동장이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을”은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고 수리에 따른 확인을 받아 수리비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지원대상자가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을 하여야 하며, 긴급출동 지역은 강남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수리비용 지원)

- ① “갑”은 지원대상자가 1인에 대한 1년간 총수리비 지원 범위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만원, 일반장애인 20만원)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휠체어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을 제외한다.

제10조(수리비청구 및 지급)

- ① “을”은 매월 수리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청구한 수리비를 확인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30일까지 “을”의 지정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약정해지 및 불이익 평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갑”은 사실확인 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을”이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을”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3. “갑”과 “을”이 다 같이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약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또한 “을”은 제5, 6조 위반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향후 강남구 휠체어 수리 업체 심의 시,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12조(책임한계) “을”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13조(보착)

- ①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

사업 처리지침을 준용하며, 약정상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이 불응할 경우에는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9. 22.

“갑”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16-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화동 512 3-26 (개화동)

대표 (주)신연희



서울특별시 강남구장애인휠체어수리전문업체지정약정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강남휠체어복지센터 (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원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한 수리전문업체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갑”과 “을”이 장애인들의 휠체어 수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정서에 있어서 “지정업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를 위해 “갑”이 지정한 전문업체를 말한다. ② 또한, “휠체어”라 함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정서의 규정은 “갑”이 “을”에게 위임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약정기간)

- ① 약정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 ② 약정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이 약정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5조(준수사항)

- ① “을”은 휠체어 수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이 “을”에게 휠체어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지원대상자의 상담·문의 등에 대하여 성의를 갖고 친절히 응하여야 한다.

3. “을”은 지정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여야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또는 지원금 중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4. “을”은 사업기간중 중도에 양도하거나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1개월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지원대상자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이 수리 의뢰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일로부터 당일 또는 익일까지 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체”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정서에 의한다.

제6조(신의성실의무) ① “을”은 휠체어 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로써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전문업체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을”은 휠체어 수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지원대상자의 휠체어 수리신청에 대하여 거주지 통장이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고 수리에 따른 확인을 받아 수리비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지원대상자가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을 하여야 하며, 긴급출동 지역은 강남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동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수리비용 지원)

- ① “갑”은 지원대상자가 1인에 대한 1년간 총수리비 지원 범위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만원, 일반장애인 20만원)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휠체어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제외한다.

제10조(수리비청구 및 지급)

- ① “을”은 매월 수리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청구한 수리비를 확인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30일까지 “을”의 지정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약정해지 및 불이익 평가) ~~(약정해지 및 불이익 평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갑”은 사실확인 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을”이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을”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3. “갑”과 “을”이 다 같이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약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또한 “을”은 제5, 6조 위반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향후 강남구 휠체어 수리 업체 심의 시,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12조(책임한계) “을”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13조(보직)

- ①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

사업 처리지침을 준용하며, 약정상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이 불응할 경우에는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9. 22.

“갑”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16-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29, 402호 (일원동, 대평빌딩)

(주)강남신버지센터



대표 심영완



서울특별시 강남구장애인휠체어수리전문업체지정약정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케어존(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원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한 수리전문업체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갑”과 “을”이 장애인들의 휠체어 수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정서에 있어서 “지정업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를 위해 “갑”이 지정한 전문업체를 말한다. ② 또한, “휠체어”라 함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정서의 규정은 “갑”이 “을”에게 위임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약정기간)

- ① 약정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 ② 약정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이 약정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5조(준수사항)

- ① “을”은 휠체어 수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이 “을”에게 휠체어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지원대상자의 상담·문의 등에 대하여 성의를 갖고 친절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비용 지원)

- ① “갑”은 지원대상자가 1인에 대한 1년간 총수리비 지원 범위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만원, 일반장애인 20만원)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휠체어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제외한다.

제10조(수리비청구 및 지급)

- ① “을”은 매월 수리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청구한 수리비를 확인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30일까지 “을”의 지정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약정해지 및 불이익 평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갑”은 사실확인 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을”이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을”的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3. “갑”과 “을”이 다 같이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약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또한 “을”은 제5, 6조 위반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향후 강남구 휠체어 수리 업체 심의 시,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12조(책임한계) “을”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13조(보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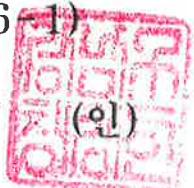
- ①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

사업 처리지침을 준용하며, 약정상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이 불용할 경우에는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9. 22

“갑”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16-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인)



“을” 주소 : 서울특별시 108-17-64567

케어존 성민용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5길 174 B동 대표

소매 의료기기및수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장애인휠체어수리전문업체지정약정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엠코리아 휠체어수리 “을”이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원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한 수리전문업체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갑”과 “을”이 장애인들의 휠체어 수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정서에 있어서 “지정업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를 위해 “갑”이 지정한 전문업체를 말한다. ② 또한, “휠체어”라 함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정서의 규정은 “갑”이 “을”에게 위임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약정기간)

- ① 약정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 ② 약정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이 약정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5조(준수사항)

- ① “을”은 휠체어 수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이 “을”에게 휠체어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지원대상자의 상담·문의 등에 대하여 성의를 갖고 친절히 응하여야 한다.

3. “을”은 지정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여야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또는 지원금 중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4. “을”은 사업기간중 중도에 양도하거나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1개월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지원대상자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이 수리 의뢰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일로부터 당일 또는 익일까지 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체”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정서에 의한다.

제6조(신의성실의무) ① “을”은 휠체어 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로써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전문업체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을”은 휠체어 수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지원대상자의 휠체어 수리신청에 대하여 거주지 동장이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고 수리에 따른 확인을 받아 수리비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지원대상자가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을 하여야 하며, 긴급출동 지역은 강남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수리비용 지원)

- ① “갑”은 지원대상자가 1인에 대한 1년간 총수리비 지원 범위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만원, 일반장애인 20만원)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휠체어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제외한다.

제10조(수리비청구 및 지급)

- ① “을”은 매월 수리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청구한 수리비를 확인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30일까지 “을”의 지정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약정해지 및 불이익 평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갑”은 사실확인 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을”이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을”的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3. “갑”과 “을”이 다 같이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약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 또한 “을”은 제5, 6조 위반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향후 강남구 휠체어 수리 업체 심의 시,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12조(책임한계) “을”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

사업 처리지침을 준용하며, 약정상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이 불응할 경우에는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 .

“갑”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1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인)

(주) 엠크리아 흄케어스

“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40길 32, 101호

대표 조미숙